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안내 [22. 4. 1. 부 수정본]

- 21년 9월 1일부터 K-ETA 제도가 본격 시행(의무화)됨에 따라, 과거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 탑승권 발권(Boarding Pass)이 가능합니다. K-ETA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 한화 1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참조

-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22. 4. 1. 기준) K-ETA 신청대상은 ①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96개) 국민」으로 한정되며, ②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16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추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K-ETA 신청 가능 국가(96개) 및 잠정 중지된 국가(16개) 목록은 [붙임 2,3] 참조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K-ETA Center)에서는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 [www.k-eta.go.kr → 알림마당 → 문의사항]을 통해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의 언어로 외국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평일 09:00~12:00 , 13:00~18:00)

※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는 대한민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격리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입국자는 격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PCR 음성확인서 및 격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ETA센터 소관이 아니므로 주무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ca.go.kr, ☎1339)

1 신청

- 최소 출발 72시간 전에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 * 웹 : www.k-eta.go.kr, 모바일 앱 : K-ETA
- 단체관광객 등을 위해 신청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동반 신청 가능
- **잘못된 정보로 신청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며 재신청 필요합니다. 반드시 최종 결제 전 입력한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얼굴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K-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사증면제 협정 국가(66개국) &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 국가(46개국)}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22. 4. 1. 기준) ①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96개 국가 국민' 및 ②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16개국가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

■ [제외 대상] 신청 대상국 국민이나, K-ETA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 대한민국 복수국적자(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소지), 주한미군 현역군인, 승무원 및 선원(선원입국예정자), ABTC 소지자, 환승객, UN 여권소지자, 대한민국 사증소지자, 대한민국 등록외국인, 직항 노선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자(현재 운영중단)

☞ 제외 대상 관련 '자주묻는 질문' 은 **[붙임 4]** 참조

■ [면제 대상] 원칙적으로 K-ETA 신청 대상이나, 사전에 관계기관에서 면제를 요청(공문)하여 우리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주한미군 현역군인의 가족, 미군속

3 수수료

- 한화 1만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의2호)이며 카드수수료 3% 별도
-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결제 (환율에 따라 국가별 수수료 자동 계산)

4 K-ETA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등 안내

- 허가일부터 2년
 - 2년 동안 입국 횟수에 관계 없이 유효
 - 다만 K-ETA 신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이내라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K-ETA가 유효함
- 무사증 입국자의 “대한민국 체류기간”은 [별첨 엑셀파일] 참조
- K-ETA는 VISA가 아닙니다. 따라서 K-ETA 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붙임 2

K-ETA 신청 가능 국가 ('22. 4. 1.부 96개국)

□ 기존 K-ETA 신청 가능국가 (50개)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 22. 4. 1.부터 K-ETA 신청 가능국가 (46개)

과테말라, 나우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마셜제도, 말레이시아, 모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바레인, 바하마,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오만,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스라엘,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투발루,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피지, 호주

붙임 3

K-ETA 신청이 잠정 정지 중인 국가 ('22. 4. 1.부 16개국)

아시아 (7개국)	마카오,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쿠웨이트, 타이완, 홍콩
미주 (3개국)	그레나다, 파나마, 페루
오세아니아 (6개국)	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통가

※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16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는 공지사항 (5 :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입니다. K-ETA를 신청해야 하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 K-ETA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단, 항공 탑승권 (Boarding Pass) 발권을 위해서는 소지하신 한국 및 미국 여권을 모두 제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불일치 또는 기타 사유 등이 있는 경우 항공사에서 K-ETA 미소지자로 판단하여, 항공 탑승권 발권을 거절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해당 사항을 항공사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복수국적자이나 한국 여권이 없으시다면,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 발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미국 여권으로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K-ETA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Q.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현역미군은 K-ETA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주한미군현역)은 K-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에 여권이 아닌 ID카드를 제시하고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Q. 선원(선원입국예정자 포함), 승무원은 K-ETA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선원, 승무원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K-ETA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유효한 ABTC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K-ETA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현재 유효한 ABTC 카드 소지자는 K-ETA를 받지 않아도 항공권 발권이 가능합니다.

Q. 제주도를 여행하려고 하는데 K-ETA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직항으로 제주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K-ETA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주도 방문 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K-E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환승객도 K-ETA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은 K-ETA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 환승객이지만 수하물을 찾기 위해서 입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K-ETA 신청 대상이 아닌가요?

A. 아니요. 수하물을 찾기 위해서 입국 후 다시 발권 수속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K-ETA 신청 대상입니다.

Q. K-ETA 대상국가이나 유효한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K-ETA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K-ETA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